금융위원회	보도참고자료	금융감독원

배포시점 2026.10.6.(화) 보도 배포시

최근 금융권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따른 보이스피싱·스미싱 등 피해에 주의하세요.

✓ 최근 **일부 금융권 개인정보 유출**로 인한 **피싱·스미싱** 등 2차 피해 우려 확산

- 비밀번호·OTP 정보 등은 유출되지 않았으나 **유출된 개인정보**를 **결합**한 **맞춤형 대출빙자 사기**에 각별히 유의

✓ **대출**을 이유로 **선입금·기존 대출 상환·앱 설치** 등을 요구하면 **사기**이며, **「금융거래 안심차단서비스」** 가입 및 **「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」** 등록 등을 통해서도 명의도용 대출 등 **금융사기 피해**를 **사전 예방 가능**

✓ **금융당국**은 10.6. **금융회사**를 **긴급 소집**하여 **개인정보 유출 2차 피해 특별대응기간**(1개월, 연장 가능) 및 **피해고객 전담 창구 운영, 유출 개인정보**를 **결합**한 **이상거래탐지시스템**(FDS) **강화**, **보이스피싱 정보공유·분석 AI 플랫폼**(ASAP)을 통한 대응 등 **2차 피해 방지**에 **총력**을 다하도록 지도

▣ 소비자경보 2026 - 26 호			
등급	주의	경고	위험
대상	금융소비자 일반		

■ 개인정보 유출을 틈탄 맞춤형 '대출 빙자 사기'에 주의

최근 **금융회사**에서 **개인정보 유출사고**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**보이스피싱·스미싱 등** 금융사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**소비자 불안**이 커지고 있어, 금융당국은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**소비자경보(주의*)**를 발령하였다.

* 피해 발생 확인시 즉시 소비자경보 격상 예정

특히 연휴 이후 금융거래가 본격 재개되는 시점을 틈타 사기범들은 성명, 주소지 등 **유출된 개인정보**를 바탕으로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여

저금리 대출, **대환대출** 등 **정상적인 대출 상담**을 가장하거나, **개인정보 유출 피해보상** 등을 **미끼**로 피해자에게 접근할 우려가 있다.

사기범은 소득, 대출한도 등 본인의 금융정보를 정확히 언급하며 실제 금융회사의 대출 안내인 것처럼 접근할 수 있어, **내 정보를 알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정상적인 연락이라고 믿어서는 안 된다.**

※ 개인정보 유출을 빙자한 주요 금융사기 수법

❶ **(유출보상 빙자)** '유출 피해고객 대상 금리우대·특별대출', '유출 피해고객 대상 피해보상 안내' 등의 문자를 발송하여 인터넷 주소(URL) 클릭 및 상담 유도

❷ **(대환대출 빙자)**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며 기존 대출을 먼저 상환해야 한다고 속여 사기범 계좌로 이체 유도

❸ **(선입금 요구)** 신용점수 상향, 거래실적 확보, 보증료 등을 명목으로 대출 실행 전 금전 입금 요구

❹ **(악성앱 설치)** 대출신청서 작성, 보안점검 등을 명목으로 원격제어앱·악성앱 설치를 유도하여 휴대폰 장악

이 밖에도 사기범이 **금융회사**나 **금융감독원 직원** 등을 **사칭**하여 '유출 피해로부터 자산을 보호해야 한다'며 특정 계좌로 **자금 이체**를 **요구**할 수도 있다. 그러나 **금융당국과 금융회사는 전화·문자로 비밀번호나 인증번호를 요구하거나, 피해보상·계좌보호를 이유로 자금 이체를 요구하지 않는다.** 또한, 대출 과정에서 **어떠한 명목으로도 선입금이나 앱 설치를 요구하지 않는다.** 따라서 기존 대출 상환을 이유로 **개인 명의 계좌로 이체를 요구하면 사기**이므로 즉시 거절해야 한다.

아울러 금융회사나 금융당국은 개인정보 유출 안내나 피해보상 등 어떠한 이유로도 **인터넷 주소**(URL)**를 보내지 않으니 불분명**한 **문자메시지**의 **인터넷 주소**(URL)는 절대 **클릭**하지 **말고** 바로 **삭제**해야 한다. 본인의 **개인정보 유출 여부**는 해당 금융회사의 **공식 홈페이지·앱 또는 고객센터 대표번호**를 통해 **직접 확인**해야 하며, 혹시 모를 개인정보 추가 유출에 대비하여 **본인 인증**에 필요한 **정보***를 **휴대폰**에 **저장**하지 **말아야** 한다.

* 주민등록번호, 금융계좌 비밀번호, 신분증 사본 등

■ 「금융거래 안심차단서비스」 가입 및 「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」 등록으로 명의도용 대출 피해를 사전 예방

한편, 사기범이 악성앱 등을 통해 확보한 정보로 **피해자 명의의 대출을 무단 실행**하는 피해도 우려된다. 금융권에서는 이러한 명의도용 피해로부터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여신거래·비대면 계좌개설·오픈뱅킹 등 **「금융거래 안심차단서비스(3종)」**를 시행하고 있다. 안심차단서비스에 가입하면 **대출**, **비대면 예금계좌 개설**, **오픈뱅킹**이 무단으로 실행되어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**사전에 차단**할 수 있다.

지난 '25년 **SKT 해킹사고** 및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 등 발생 당시 **금융사기 위험**으로부터 **스스로**를 **보호**하고자 하는 **소비자**들이 **급격히 늘어나면서 안심차단서비스 가입** 신청이 **크게 증가***한 바 있다.

* '26.8월말 기준 약 700만명 가입(중복 가입 가능)

※ 안심차단서비스 개요 ☞ 안심차단서비스 가입방법은 (붙임2)~(붙임4) 참고

❶ **(여신거래 안심차단)** 신용대출, 카드론, 신용카드 발급, 할부금융, 예·적금 담보대출 등 개인 명의의 여신거래를 차단('24.8.23. 시행)

❷ **(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)** 범죄조직의 수익의 통로로 사용될 수 있는 대포통장 개설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 비대면 계좌개설을 차단('25.3.12. 시행)

❸ **(오픈뱅킹 안심차단)** 오픈뱅킹을 통한 계좌정보 무단조회 및 이체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오픈뱅킹 서비스를 차단('25.11.14. 시행)

「안심차단서비스」는 **거래 중**인 **금융회사*** **영업점**을 **방문**하거나 '**내계좌 한눈에**'(payinfo.or.kr) 또는 **은행앱**을 통해 간편하게 **신청**할 수 있다. 서비스 신청 이후에도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**금융회사 영업점**을 **방문**하여 서비스를 **해제**할 수 있다. 서비스를 **해제하면 곧바로** 해당 **금융거래**가 **가능**하고, 다시 **서비스**에 **재가입**하는 것도 **가능**하다.

* 은행, 저축은행, 농협, 수협, 신협, 새마을금고, 산림조합, 우체국

아울러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'파인'(fine.fss.or.kr)의 **「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」**에 본인 정보를 등록할 수 있다. 등록한 정보는 금융회사에 실시간으로 공유되며, 이후 본인 명의의 **신규 계좌개설, 신용카드 발급 등이 제한**되어 명의도용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.

■ 피해 의심 또는 실제 금전 피해 발생 시 즉시 신고하고 지급정지 요청

만약 보이스피싱 등 **금융사기 피해**가 **의심**될 경우 경찰청 **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(1394)**를 통해 **피해 상담**을 받을 수 있다. 또한 사기범에게 속아 돈을 이체하는 등 실제 **금전적인 피해**가 **발생**한 경우 즉시 **경찰(112)**이나 **금융회사 콜센터**에 연락하여 **지급정지**를 **요청**해야 한다.

■ 개인정보 유출사고 관련 금융당국의 대응

금융당국은 10.6.부터 1개월간 「**개인정보 유출 2차피해 특별대응기간**」(필요시 연장)으로 지정하고 **금융권**과 함께 **개인정보 유출** 등에 따른 **2차 피해 예방**을 위하여 **총력 대응**하고 있다.

10.6.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**피해예방점검회의***를 **긴급 소집**하고 유출된 정보가 **금융사기**에 **악용**될 가능성에 **대비**하여 아래와 같은 사항을 **지도**하였다.

* (일시·장소) 10.6.(화) 14:00 금융감독원 9층 회의실
(참석기관) 은행·금융투자·상호금융·여신업권 금융회사, DAXA, 금융보안원 등

❶ **(피해고객 전담창구 설치·운영)** **특별대응기간**동안 관련 금융회사가 개인정보 유출 **전담 상담창구**를 **운영**하고, **정보유출 고객**에 대해서는 **안심차단서비스 가입** 등을 개별적으로 **적극 안내**하도록 하였다. 또한 **피해 신고**가 **접수**되거나 의심될 경우 **금융당국**에 **즉시 보고** 및 **타 금융회사**와 **공유**하여 **피해 확산 방지** 조치가 **신속히** 이루어지도록 하였다.

❷ **(FDS 모니터링 강화)**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**유출된 개인정보**를 **결합**한 **이상거래**에 대해 **밀착 모니터링**하고 **임시조치**를 **실시**하는 등 **FDS 운영 강화**를 지도하였다. 이에 따라 해당 고객 명의의 비대면 대출 및 계좌개설, 고액 이체 등 **고위험 거래**에 대한 **모니터링**과 **추가 본인확인**이 **강화**된다.

❸ **(ASAP 활용 공동 대응)** 금융회사·통신사·수사기관이 참여하는 **보이스피싱 정보공유·분석 AI 플랫폼**(ASAP*)으로 **유출사고 관련 의심정보**를 **신속히 공유****하여 의심계좌 지급정지 등 **피해 차단**에 **적극 활용**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다.

* AI-based anti-phishing Sharing & Analysis Platform
** '25.10월 출범 이후 '26.8월까지 의심정보 50만건 공유, 의심계좌 7,666개 지급정지 및 약 699.4억원의 피해를 예방

❹ **(피해구제 관리·감독)** 사고 관련 금융회사가 **피해 발생 여부**를 지속 **모니터링**하고 실제 피해 확인시 **피해구제 및 보상 절차**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하였다.

아울러, 금융당국은 개인정보 유출을 이용한 **실제 피해**가 **확인**되는 경우 **소비자경보 등급**을 **격상**(주의→경고)하고 **추가 조치**를 마련할 계획이다.

■ 대국민 당부사항

현재까지 금번 금융회사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하여 보이스피싱 등 피해로 **고객 자금**이 **유출된 사례**는 **확인되지 않았습니다.** 따라서 **소비자**는 예금 등 금융자산의 안전에 대해 **불필요한 오해를 지양**해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개인정보 유출여부 및 유출 내용 등은 금융회사 공식 홈페이지·앱 또는 고객센터 대표번호 등 공식 채널로 직접 확인

다만, **피해 발생 가능성**을 완전히 **배제할 수는 없으므로**, **금융당국**과 **금융회사**가 안내하는 **「개인정보 유출 관련 소비자 행동요령*」** 등에 따라 **필요한 조치**를 취하고 금융사기 등 **2차 피해**에 **각별히 주의**해 주시기 바랍니다.

* 「개인정보 유출 관련 소비자 행동요령」은 (붙임1) 참고

담당 부서	금융위원회 금융안전과	책임자	과 장	김태훈	(02-2100-2970)
		담당자	사무관	이다행	(02-2100-2975)
	금융감독원 금융사기대응단	책임자	팀 장	정윤미	(02-3145-8130)
		담당자	선 임	이다영	(02-3145-8124)
	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버침해조사팀	책임자	과 장	김우철	(044-202-6490)
		담당자	사무관 사무관	김성환 김재남	(044-202-6491) (044-202-6493)
	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전실태점검과	책임자	과 장	김해숙	(02-2100-3060)
		담당자	사무관	정진아	(02-2100-2424)
	은행연합회 소비자보호부	책임자	팀 장	모경원	(02-3705-5043)
		담당자	차 장	김찬수	(02-3705-5042)
	금융투자협회 투자자보호부	책임자	부 장	김효실	(02-2003-9420)
		담당자	과 장	이다솜	(02-2003-9427)
	저축은행중앙회 소비자보호부	책임자	부 장	윤호병	(02-397-8680)
		담당자	과 장	김정중	(02-397-8692)
	여신금융협회 소비자금융부	책임자	부 장	이경원	(02-2011-0742)
		담당자	팀 장	조숙희	(02-2011-0717)
	농협중앙회 금융소비자보호부	책임자	팀 장	박혜순	(02-2080-2221)
		담당자	차 장	노혜연	(02-2080-2225)
	신협중앙회 금융소비자보호팀	책임자	팀 장	박미연	(042-720-1462)
		담당자	차 장	민영숙	(042-720-1465)

	수협중앙회 소비자보호단	책임자	차 장	국대근	(02-2240-2221)
		담당자	직 원	송예린	(02-2240-5990)
	새마을금고중앙회 금융사기대응부	책임자	부 장	장봉중	(02-2145-9541)
		담당자	차 장	구혜주	(02-2149-9549)
	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	책임자	본부장	홍 균	(02-6959-8084)
		담당자	차 장	김광연	(02-6959-8087)
	금융보안원 ASAP실	책임자	실 장	유영록	(02-3495-9950)
		담당자	팀 장	이득기	(02-3495-9970)
	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	책임자	사무국장	한성택	(02-761-2781)
		담당자	과장	김서준	(02-761-2782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대체불가 대한민국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붙임1 **개인정보 유출 관련 소비자 행동요령**

사전에 미리 해두기	
① 안심차단서비스 가입	「**금융거래 안심차단서비스**」에 가입*하여 명의도용 대출·계좌개설·오픈뱅킹 등을 사전 차단 * 금융회사 영업점 방문 또는 '내계좌한눈에'(payinfo.or.kr) 및 은행앱 통해 신청
② 개인정보노출자 등록	「**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***」에 본인 정보를 등록하여 본인 명의의 신규 계좌개설 및 카드 발급 등 제한 *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'파인'(fine.fss.or.kr) 접속
③ 내 계좌 및 대출 점검	'내 계좌 한눈에'(payinfo.or.kr)에서 본인 모르게 개설된 계좌나 실행된 대출이 있는지 확인
④ 개인정보 저장 금지	신분증 사본, 계좌 비밀번호 등 **개인정보**를 **휴대폰에 저장하지 않기**

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았을 때	
① URL 클릭 금지	'개인정보 유출 확인', '피해보상', '저금리 대출' 등을 안내하는 **문자의 URL은 누르지 말고 삭제**
② 내 정보를 알아도 의심	상대방이 이름·소득·대출정보 등을 정확히 알고 있더라도 정상적인 연락으로 믿지 않기
③ 공식 채널로 직접 확인	개인정보 유출 여부와 대출 안내는 해당 금융회사 **공식 홈페이지·앱** 또는 **고객센터 대표번호**로 **직접 확인**
④ 요구에 응하지 않기	**'선입금', '기존대출 상환', '앱 설치', '인증번호·신분증 사진 요구'**는 모두 사기이므로 거절

피해가 의심될 때	
① 즉시 지급정지 요청	**경찰(1394** 또는 **112)** 또는 **금융회사 콜센터**에 즉시 **지급정지** 요청
② 피해구제 신청	지급정지 요청 후 **최대 14일 이내**(가급적 3영업일 이내 권장) 해당 금융회사에 **피해구제 신청서 제출**
③ 악성앱 조치	악성앱 설치가 의심되면 **다른 전화**로 **신고**하고, 휴대폰을 백신앱으로 점검하거나 **초기화**
④ 추가 피해 차단	개인정보노출자 등록, 금융거래 비밀번호 변경 등

붙임2 여신거래 안심차단서비스 신청방법(은행 앱)

① 홈 화면-"메뉴" 클릭	② 인증/보안 클릭	③ 안심차단서비스 클릭
		
④ 여신거래 차단 선택	⑤ 약관 동의	⑥ 신청 완료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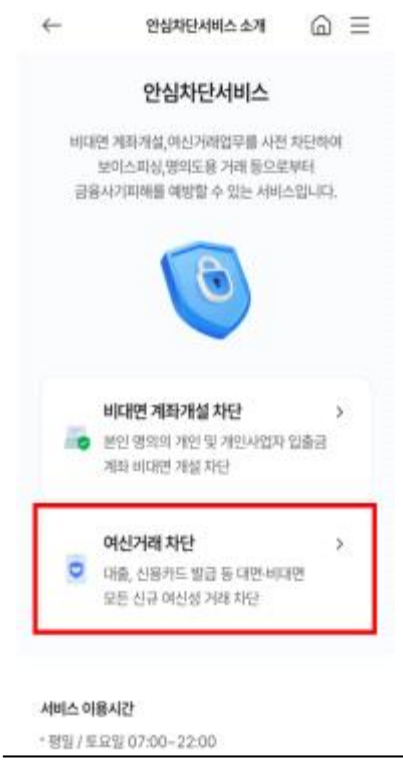		

붙임3 **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서비스 신청방법(은행 앱)**

① 홈 화면-"전체메뉴" 클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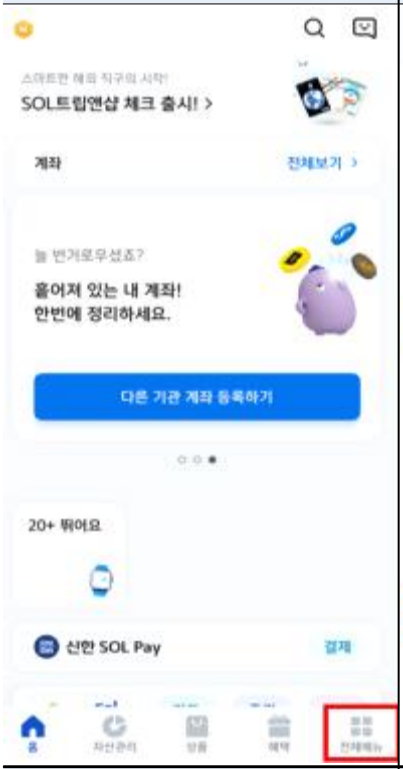

②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클릭



③ 안심차단 신청



④ 오픈뱅킹 이용정보 확인



⑤ 동의서 작성



⑥ 결과 확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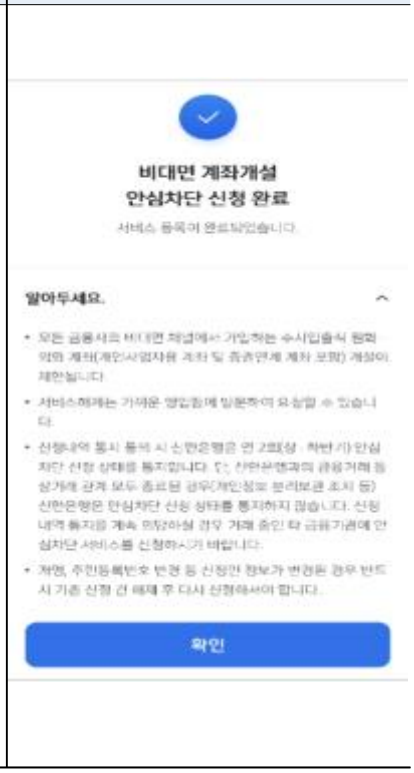

붙임4 **오픈뱅킹 안심차단서비스 신청방법(어카운트인포 앱)**

① "내 금융 안심차단" 클릭	② 안심차단 신청 화면	③ 신청 가능 금융회사 확인
		
④ 오픈뱅킹 이용정보 확인	⑤ 가입 신청	⑥ 결과 확인
		

붙임5 **여신거래 안심차단서비스 안내자료**



붙임6 **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서비스 안내자료**

나도 모르게 개설된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?

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

서비스 신청으로 예방하세요.



서비스 신청방법

금융회사 방문
거래중인 금융회사 영업점에 방문하여 신청

비대면 신청
금융결제원의 어카운트 인포 (모바일 앱 및 홈페이지) 또는 거래중인 은행의 모바일·인터넷뱅킹을 통해 신청

서비스 해제방법



보이스피싱, 명의도용 사기범 등의 무단 해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**금융회사의 영업점 방문**을 통해서만 해제 신청이 가능합니다.

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에 가입하시면 전 금융권의 수시입출식 계좌의 비대면 개설을 사전에 일괄 차단할 수 있습니다.

금감원 보이스피싱지킴이 QR

금융위원회 · 금융감독원 · 은행연합회 · 금융투자협회 · 저축은행중앙회
농협중앙회 · 신협중앙회 · MG새마을금고중앙회 · 수협중앙회 · 우정사업본부

붙임7 | **오픈뱅킹 안심차단서비스 안내자료**

오픈뱅킹을 통한 무단 출금 · 이체

오픈뱅킹안심차단

서비스 신청으로 예방하세요.



오픈뱅킹 안심차단 서비스는 소비자가 원하지 않는 오픈뱅킹 거래를 사전 차단하는 서비스로, 차단 희망 금융회사를 직접 선택하여 안심차단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적용 대상 은행, 저축은행, 농협, 수협, 신협, 새마을금고, 산림조합, 우체국, 증권사에서 개설한 모든 계좌



신분증 분실, 악성앱 설치 등으로 개인정보가 노출되어 **오픈뱅킹을 통한 무단 계좌 출금 및 조회를 방지**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유용합니다.



거래중인 금융회사의 영업점에 방문하거나, 금융결제원의 어카운트인포(모바일) 및 은행의 모바일 앱을 통해 **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**할 수 있습니다.



서비스 해제 신청은 보이스피싱, 명의도용 사기범의 무단해제를 방지하기 위해 거래 중인 금융회사의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.

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저축은행중앙회
농협중앙회 신협중앙회 MG새마을금고중앙회 수협중앙회 우정사업본부